탄소중립

창원RE100 시민클럽

“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행동 ”

7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13 기후변화와 대응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제 2 차 대 의 원 총 회

ecoop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Changwon Energy Cooperative

협동조합 7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이다.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1표)를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한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 잉여금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4.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탄소중립

창원RE100 시민클럽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이익 나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

주소 : 창원시 성산구 신월로 5번길 28
T. 055-225-3479 F. 0303-0262-4275 E. cecoop21@daum.net
블로그: https://blog.naver.com/cecoop21/222576487676

[출자금 및 펀드 입금계좌 안내]
· 경남은행 207-0131-9972-06 | 예금주: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 농협은행 301-0298-8067-21 | 예금주: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목 차]

1. 총회 식순 ---------- 5

2. 전차 총회 의사록 ---------- 7

3. 잉여금 배당 규약 ---------- 10

4. 2022년 사업 및 결산보고 ---------- 15

5. 2022년 감사보고서 ---------- 27

6.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 ---------- 28

7. 202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 30

참고1.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정관 ---------- 34
참고2. 대의원 선출 규정 ---------- 51
참고3. 임원의 업무수당 및 실비변상 규정 ---------- 53
참고4. 직원보수 규정 ---------- 55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해당월 보수월액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월 21일부터 해당월 20일까지 무급휴무일이 있는 경우, 해당월 보수월액 산정시 기본급과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차감 지급한다.

③ 월 중간에 신규 임용, 복직, 승진, 감봉, 휴직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직원 기본급 산정표≫

(단위: 원)

직급 호봉	1급(국장)	2급(팀장)	3급(과장)	4급(대리)
1	당해 연도 최저임금 +400,000	당해 연도 최저임금 +200,000	당해 연도 최저임금 +100,000	당해 연도 최저임금
2	1호봉 + 3% 인상, 1,000원 미만 절사			
3	2호봉 + 3% 인상, 1,000원 미만 절사			
4	3호봉 + 3% 인상, 1,000원 미만 절사			
5	4호봉 + 3% 인상, 1,000원 미만 절사			

부칙

1조 적용례(2023. 3. 3. 제정)

본 규정은 2023. 3. 3. 이후 직원 보수를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2023. 3. 3.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총회, 이사회 등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수의 구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정규직의 경우 기본금, 각종 수당, 상여금을 지급하며, 비정규직, 기간제, 임시직의 경우는 개별 근로계약으로 정한다.

① "기본급"이란 해당 직원의 직급, 호봉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월액을 말하며 세부내역은 아래 [별표]에 따른다.

② "각종수당"은 다음과 같다.

1. 시간 외 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상급자의 승인을 받은 근무에 한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2. 직책급은 국장 200,000원, 팀장 100,000원으로 한다.

3. 급식보조금은 200,000원으로 하며, 교통보조비는 300,000원 이하로 하되 해당 직원의 출퇴근 여건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결정한다.

3. "상여금"이란 명절상여금과 실적성과급을 말하며, 명절상여금은 기본급의 20% 이내에서 실적상여금은 해당년도 총보수액의 100% 이내에서 정한다. 다만 대상직원의 선정과 성과급 액수 결정은 재적 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정한다.

제4조(보수월액의 산정 및 지급) ① 보수월액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 총 회 식 순 -

1. 이사장 인사말

2. 성원보고

3. 개회선언

4. 서기 및 의사록 기명날인인 선정

5. 전차 총회 의사록 낭독 및 승인

6. 의안 심의 · 의결
- 제1호 의안. 잉여금 배당 규약 제정의 건
- 제2호 의안. 2022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2022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7. 폐회선언

임원별 월10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만 인정

5. 기타 경비 :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비

③출장비, 접대비 지급 시에는 반드시 관련보고서 제출여부와 필요한 적격증빙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1조 적용례(2022. 9. 28. 제정)

본 규정은 2022. 9. 28. 이후 임원의 업무수당 및 실비변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참고3. 임원의 업무수당 및 실비변상 규정

임원의 업무수당 및 실비변상 규정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2022. 9. 28.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의 업무수당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일지)
①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은 반드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업무일지에는 작성자의 성명, 근무시간, 장소, 업무내용을 기록하고 지출된 실비내역과 증빙을 첨부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임원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하나의 업무일지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업무수당 지급)
①이사장은 수시로 임원의 업무일지를 결재하여야 하며, 매월 임원별 합산 업무시간에 따라 업무수당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업무수당은 업무시간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하로 결정하되 1일 최대로 인정하는 근무시간은 10시간으로 한다.
③회의비, 출장비가 지급되는 회의와 출장은 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실비변상)
①임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의 대상은 교통비, 식비, 회의비, 출장비, 접대비, 기타 경비로 한다.
②실비변상의 적용기준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비 : 대중교통,택시,통행료는 영수증 기준,
주유비는 당일 오피넷 경남평균단가 적용
전기차는 당일 급속충전단가 적용
이동거리는 지도앱으로 측정한 거리 적용
2. 회의비 : 1회 7만원(1인 월4회 이하), 이사회, 위원회 등 공식 회의에 적용
3. 출장비 :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숙박비 10만원 이하 실비, 관외 출장시 적용
4. 접대비 : 참석자 1인당 2만원 이하 실비(동시 참석자 5인 이내만 인정)

전차 회의록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2022년 제1차 정기 총회(서면) 의사록

○ 일　시 : 2022년 3월 22일(화) 10:00
○ 장　소 :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사무실
○ 참　석 : 안명선, 김연옥, 이종훈, 서영옥, 이규철

-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정부의 실내 모임 자제권고 협동조합 정기총회에 따른 등기변경, 경영공시, 사업추진 차질 방지를 위해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 허용(기획재정부 2020.03.20. 지침)에 따라 2022년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정기 총회를 서면으로 진행하다.

- 2022년 3월 4일(금)부터 3월 9일(수)까지 총회 자료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두어 총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다. 2022년 3월 10일(목)부터 3월 18일(금)까지 조합원으로부터 서면 결의서를 받아 정기 총회 개최에 가름하기로 하다.

- 안명선 이사장이 의장으로서 서면결의 확인을 위한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 서영옥 이사가 재적 조합원 160명 중 86명이 서면 결의서를 제출해, 재적인원 과반수가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 의장이 총회 회의록 기명날인을 위하여 조합원 3명을 추천할 것을 요구하여 이규철 이사가 김연옥, 이종훈, 서영옥을 추천하여 기명날인인을 확정하다.

제7조(후보등록)
①후보등록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후보등록은 다른 조합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추천서, 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종류와 양식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선출 대의원 정수와 후보자 수가 일치하거나 미달할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 수가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이사회에서 미달하는 대의원 후보를 추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사회 추천 후보를 포함하여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투표 및 개표관리)
①투표방법은 특정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진행하거나 투표용지를 후보자에게 발송하는 우편투표 방식, 네이버폼 등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단, 투표방법의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및 개표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투표, 개표사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즉시 실시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후보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투표함을 이송하여 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④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 선거공고에서 안내된 방법으로 개표를 진행한다.

제9조(당선인의 확정)
①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있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정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 결정된 당선인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④확정된 당선인이 대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차점자가 잔여임기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경비의 지급) 조합은 규정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의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일반관례에 따르거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조 적용례(2022. 9. 28. 제정)
본 규정은 2022. 9. 28. 이후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참고2. 대의원 선출 규정

대의원 선출 규정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2022. 9. 28.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조합 정관 제29조(대의원총회)에 따른 대의원 선거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피선거권) 선거 공고일 직전일 현재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정관 제5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제4조(선거관리)
①대의원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괄 관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기능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관리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또는 선거관리책임자, 이하 같다)는 선거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선거에 관한 각종 문서와 자료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당해 대의원의 임기 동안 또는 관련 분쟁이 있는 기간 동안 조합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구 및 정수)
①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창원특례시 행정구인 성산구, 의창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와 창원시 외 선거구의 6개로 한다.
②선출하는 대의원의 정수는 선거 공고일 직전일 현재 해당 선거구 조합원 수 10명당 1명으로 하며 10명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1명으로 계산한다.

제6조(선거공고 및 선거인명부)
①대의원 선거는 투표일 20일 전에 선거구별 선거인 수 및 대의원 정수, 후보등록기간 및 방법, 투표일, 투표장소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사항을 공고하고 투표일 10일 전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하여야 한다.
②선거공고일 직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후보등록 마감일 이내에 선거인명부의 등재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조합원에게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의장이 제1호 의안에 대한 서면결의서의 동의·부동의 인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제1호 의안 2021년 감사 보고서 승인의 건>

기표	동의	부동의	기권
86명	86명	0명	0명

- 의장이 제2호 의안에 대한 서면결의서의 동의·부동의 인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호 의안 2021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기표	동의	부동의	기권
86명	86명	0명	0명

- 의장이 제3호 의안에 대한 서면결의서의 동의·부동의 인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제3호 의안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기표	동의	부동의	기권
86명	86명	0명	0명

- 의장이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2022년 03월 22일

이사장 안명선 (인)

조합원 김연옥 (인)

조합원 이종훈 (인)

조합원 서영옥 (인)

제1호 의안. 잉여금 배당 규약 제정의 건

□ **의결주문 : 잉여금 배당 규약(안)을 심의 승인해 주십시오.**

□ 관련조항 : 정관 제69조 제3항

> - 제69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 ③ 잉여금 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 조합의 청산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경상남도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2021. 09. 03. 제정

제67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금(당기 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9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 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부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부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 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잉여금 배당 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69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에 따른 잉여금배당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의 잉여금배당에 대해 정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입출자금'이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한 출자금액을 말한다.
2. '이용실적'이라 함은 각 조합원이 해당 회계연도에 조합의 성장 및 조합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를 말하며, 아래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한 수치를 말한다.

제4조(배당기준일 및 대상자) 잉여금 배당기준일은 당해 회계연도 말로 하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배당기준일에 출자금 납부를 완료한 조합원으로 한다.

제5조(이용실적배당금 산출방법) ① 조합원별 이용실적 배당금은 아래에 첨부된 [별표]에 따라 각 조합원이 받은 점수에 총회에서 결의한 금액을 곱하여 결정한다.
② 조합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조합원 본인의 당해 회계연도 이용실적 점수를 해당 조합원에게 전자문서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통지받은 점수에 대해 7일 이내에 근거자료와 함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조합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하거나 점수를 수정하여야 한다. 조합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이때 해당 조합원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배당금 지급) ① 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은 배당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해당 조합원이 제출한 계좌로 입금한다.
② 조합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조합원이 전자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가족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해당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해야 할 대금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④ 배당금을 수령할 계좌는 조합이 제5조 제2항의 개별통지 시 함께 통지하여 확인토록 하며,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7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계좌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좌번호 오류의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지급 배당금은 3년이 경과하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⑤ 배당금은 해당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출자로 전환하거나 조합원이 지정하는 기관, 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단 출자전환시 좌수 산정에 있어서 10만원을 1좌로 계산하고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좌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잉여금 배당에 대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별표]

항목	내용	점수	비고
조합성장 기여 실적	조합원 가입권유	신규 1인당 1점	최대 10점 이내
	인터뷰, 기고 등 홍보	건당 1회	최대 5점 이내, 이사회에서 결정
	출자금	1좌당 1점	가입기간 반영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계산식 : 출자좌수×가입기간일수÷365
	후원금 유치	10만원당 1점	10만원 미만은 절사
조합활동 참여 실적	교육, 행사 등 참여	1회당 1점	대상교육, 행사는 사전 공지 필수 점수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부여 최대 10점 이내
	행사, 캠페인 등 지원	1회당 1점	
	총회, 이사회 참석	1회당 1점	

제60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태양광발전소 등 전기에너지 생산 및 판매
2.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 및 관리
3. 협동조합, 환경 및 재생에너지 관련 교육, 컨설팅
4.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5.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6.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 예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4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5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6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또는 별도의 특별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7조(임원의 보수 등) 상임 임원의 보수 및 상임 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5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3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59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조합은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우선 출자를 발행할 경우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2호 의안. 2022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 **의결주문 : 2022년 사업 및 결산보고를 승인해 주십시오.**

□ 관련조항 : 정관 제34조 제1항 제5호, 제67조 제2항

-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 제67조(결산 등)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3조의2(이사의 경업금지) ① 이사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조합은 이를 조합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조합은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조합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3조의3(이사와 협동조합 간의 거래) 이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사람들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2022년 사업 추진 일지

[2022년]

· 01월 05일 : 태양광 발전소 2, 3, 4호기 REC 전자계약 서류 제출
· 01월 06일 : 태양광 발전소 KNN 뉴스 인터뷰,
태양광 발전소 2, 3, 4호기 태양광 패널 인양
· 01월 14일 : 안산단원신협 대출
· 01월 18일 : 태양광 발전소 2, 3, 4호기 태양광 패널 인양
· 01월 21일 : 헬로이슈토크 이사장님 TV 녹화,
태양광 발전소 내 인터넷 설치 및 전기 패널 설치
· 01월 23일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에 떨어진 녹 정리
· 01월 24일 : 태양광 발전소 앞 펜스 설치
· 01월 25일 : 태양광 발전소 2, 3, 4호기 사용 전 검사 완료
· 02월 03일 : 펜스 내 스텐 사다리 설치
· 02월 09일 : 태양광 발전소 2, 3, 4호기 REC 계약 체결
· 02월 17일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태양광 발전소 홍보 교육판 부착
· 02월 18일 : 창원시민에너지 1~4호기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
· 03월 22일 : 제1차 정기총회(서면) 개최
· 04월 09일 : 창원시사회적경제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
· 04월 11일 : 창원시장 간담회
· 06월 07일 : 경상남도 교육감 간담회
· 07월 28일 : 태양광 발전소 KBS 뉴스 취재
· 08월 22일 : 창원RE100시민클럽 출범식
· 08월 26일 : 합성2동 탄소중립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태양광 발전소 탐방 안내
· 09월 07일, 16일 : 5호기 예정 부지 현장 답사
· 10월 14일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캠페인 참여
· 10월 19일 :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제1차 조합원 대면 교육
· 10월 20일 :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제2차 조합원 온라인 교육
· 10월 22일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10월 27일 :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제3차 조합원 온라인 교육

2022년 사업 보고

1. 태양광발전소 건립 및 유지 관리 사업

1) 창원시민에너지 1 ~ 4호기 발전소 준공식

❍ 일　시 : 22. 02. 18.(금) 15:00
❍ 장　소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3층 옥상
❍ 참석자 : 약 100명
❍ 내　용 : 창원시민에너지 1~4호기 발전소 준공식 및 현장 설명

1호기 발전	2호기 발전	3호기 발전	4호기 발전	합계
99.68kW	99.84kW	99.84kW	99.84kW	**399.2kW**

❍ 참고 사진

설 치 전 (우리누리 청소년 문화센터)	**설 치 후** (우리누리 청소년 문화센터) **설치용량 : 총 400KW (100KW * 4개소)**
준공식 단체 촬영	조합원 명패 제막식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제44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5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6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6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총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5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에 속한 조합원(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차기 발전소 건립대상지 답사

❍ 일 정 : 22. 01. 28.(금)

❍ 장 소 : 경남문화콘텐츠랩

❍ 참 석 : 7명

❍ 내 용 : 경남문화콘텐츠랩 옥상 태양광 건립 가능성 논의

❍ 참고 사진

3) 5호기 발전소 건립대상지 답사

❍ 일 정 : 22. 09. 07.(수), 22. 09. 16.(목) (2회)

❍ 장 소 : 창원국제사격장

❍ 참 석 : 7명

❍ 내 용 : 창원시민에너지 5호기 발전소 건립 추진 준비 및 현장 답사

❍ 참고 사진

4) 창원시민에너지 1 ~ 4호기 발전량(2022년)

2022년 발전량 현황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소계(kWh)
1월	8,408	2,191	2,457	2,506	15,562
2월	12,008	10,958	12,092	12,275	47,333
3월	13,003	12,140	12,732	12,885	50,760
4월	15,378	14,492	15,148	15,089	60,107
5월	18,885	17,996	18,620	18,294	73,795
6월	13,731	13,172	13,509	13,127	53,539
7월	14,182	13,548	13,874	13,483	55,087
8월	11,805	11,057	11,448	11,275	45,585
9월	11,482	10,597	11,065	10,976	44,120
10월	12,825	11,230	12,214	12,390	48,659
11월	9,485	8,034	8,998	9,258	35,775
12월	9,148	7,486	8,672	9,028	34,334
합계(kWh)	**150,340**	**132,901**	**140,829**	**140,586**	

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제39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3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우선출자 업무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11.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2.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 소집후 정족수 미달시 출석 조합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는 제3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6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

2. 조합원 교육사업

1) 조합원 대면 교육(1회)

○ 일시 : 22. 10. 19.(수) 14:00
○ 장소 : 창원YMCA 3층 교육장

2) 조합원 온라인 교육 (2회)

○ 일시 : 22. 10. 20.(목) 오후 7시, 22. 10. 27.(목) 21:00
○ 장소 : 온라인(ZOOM)
○ 대상 :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
○ 내용 : 협동조합 소개 및 정관 교육 실시
○ 참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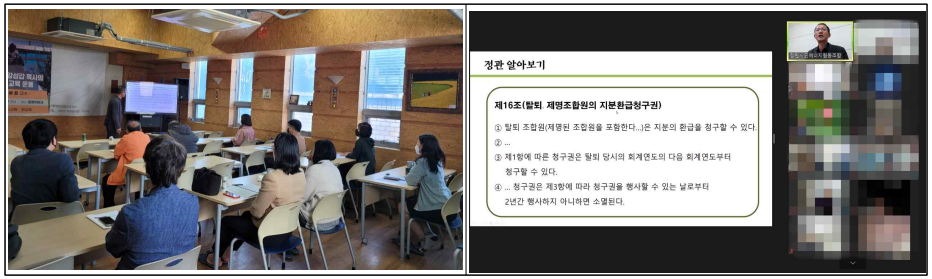

3. 협동조합 간 협동사업

1)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워크숍 참석

○ 일시 : 22. 07. 07.(목) ~ 22. 07. 08.(금)
○ 장소 : 경상북도 경주
○ 참석 : 6명(전체 참석 인원 : 약 30명)
○ 내용 :
1) 금융조달을 위한 공제사업
2) 에너지시장 참여 확대 전략 탐구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4) 사회적경제박람회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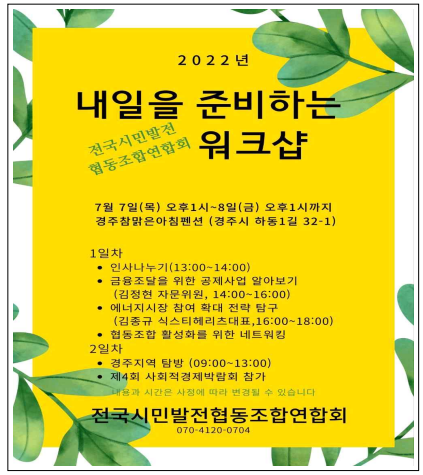

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1) KNN 언론 홍보 활동

❍ 일시 : 22. 01. 06.(목) 10:00
❍ 장소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옥상
❍ 참석 : 3명
❍ 내용 :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소개 및 태양광 발전 소개

2) 창원시 사회적경제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

❍ 일시 : 22. 04. 09.(토) 10:00 ~ 17:00
❍ 장소 : 성산아트홀 가로수길
❍ 참석 : 5명
❍ 내용 :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홍보 부스 운영 및 조합원 모집

3) 창원시장 간담회

❍ 일시 : 22. 04. 11.(월) 09:30 ~ 10:00
❍ 장소 : 창원시청 2층 접견실
❍ 참석 : 3명
❍ 내용 : 시민이익나눔형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소개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의2(조합원제안권) ①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8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⑨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4) 경상남도 교육감 간담회

❍ 일시 : 22. 06. 07.(화) 11:00
❍ 장소 :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감실
❍ 참석 : 5명
❍ 내용 : 시민이익나눔형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소개 및 조합원 가입

5) KBS 뉴스 홍보 취재

❍ 일시 : 22. 07. 28.(목) 14:00
❍ 장소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옥상
❍ 참석 : 2명
❍ 내용 : 시민이익나눔형 에너지협동조합 소개

6) 창원RE100시민클럽 출범식

❍ 일시 : 22. 08. 22.(월) 15:00
❍ 장소 : 창원시 자연학습장
❍ 참석 : 약 30명
❍ 내용 : 창원RE100시민클럽 출범 및 선언문 낭독
RE100시민클럽 안내 및 활동 내용 소개 등 공동사무국 참여

7) 합성2동 탄소중립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발전소 탐방 안내

❍ 일시 : 22. 08. 26.(금) 15:30 ~ 16:00
❍ 장소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3층 옥상(창원시민에너지 1 ~ 4호기 발전소)
❍ 참석 : 17명
❍ 내용 : 합성2동 탄소중립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발전소 탐방
❍ 참고 사진

8)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캠페인 참여

❍ 일시 : 22. 10. 14. (금) 11:00
❍ 장소 : 정우상가 앞
❍ 참석 : 2명
❍ 내용 :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민행동 홍보캠페인 전개
❍ 참고 사진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특별회비
3. 시설 및 장비 사용료
4. 각종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5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우선출자)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30일 후까지 조합원의 지분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

제21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5. 이사회 활동 보고

1) 임원구성 5명

번호	이름	직위
1	안명선	이사장
2	이규철	이사
3	김연옥	이사
4	서영옥	이사
5	이상준	감사

2) 정기 이사회 개최 : 2022년 총 6차 회의 진행

	회의	참석자	내용
1	**1차 이사회 (1월 24일)**	안명선, 이규철, 김연옥, 서영옥 참관: 이상준	· 창원시민에너지 1~4호기 발전소 준공식 개최 논의 · 이용고 배당 논의 · 정기총회 개최 논의
2	**2차 이사회 (2월 4일)**	안명선, 이규철, 김연옥, 서영옥 참관: 이상준	· 정기총회 개최 논의 · 감사보고서 논의
3	**3차 이사회 (2월 28일)**	안명선, 이규철, 김연옥, 서영옥 참관: 이상준	· 정기총회 개최 논의 · 감사보고서 논의 · 2021년 사업 및 결산보고 논의 · 2022년 사업(안) 및 회계(안) 논의
4	**4차 이사회 (5월 21일)**	안명선, 이규철, 김연옥, 서영옥 참관: 이상준	· 창원국제사격장 태양광발전 협조요청 논의 ·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논의
5	**5차 이사회 (9월 28일)**	안명선, 이규철, 김연옥, 서영옥 참관: 이상준	· 창원시민에너지 5호기 발전소 건립 논의 · 잉여금 배당 규약 논의 · 선거관리규정 논의 · 실비변상규정 논의
6	**6차 이사회 (11월 21일)**	안명선, 이규철, 김연옥, 서영옥 참관: 이상준	· 대의원 총회 논의

2022년 결산 보고

- 2022년 회계 결산 보고(회계년도 2022. 01. 01 ~ 2022. 12. 31.)

재 무 상 태 표

제 2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1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2(당)기 금 액		제1(전)기 금 액	
자 산				
Ⅰ. 유 동 자 산		197,920,774		121,323,530
(1) 당 좌 자 산		197,920,774		121,323,530
보 통 예 금		194,926,774		35,257,844
외 상 매 출 금		0		33,890,000
미 수 금		2,994,000		0
부 가 세 미 수 금		0		52,175,686
(2) 재 고 자 산		0		0
Ⅱ. 비 유 동 자 산		532,000,000		560,000,000
(1) 투 자 자 산		0		0
(2) 유 형 자 산		532,000,000		560,000,000
구 축 물	560,000,000			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8,000,000	532,000,000		0
건 설 중 인 자 산		0		560,000,000
(3) 무 형 자 산		0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0		0
자 산 총 계		729,920,774		681,323,530
부 채				
Ⅰ. 유 동 부 채		11,250,633		499,735,350
미 지 급 금		110,000		496,110,000
예 수 금		404,410		87,590
부 가 세 예 수 금		3,681,933		0
가 수 금		0		4,400
미 지 급 세 금		4,500,350		3,533,360
미 지 급 비 용		2,553,940		0
Ⅱ. 비 유 동 부 채		460,070,000		0
장 기 차 입 금		460,070,000		0
부 채 총 계		471,320,633		499,735,350
자 본				
Ⅰ. 자 본 금		193,600,000		153,000,000
출 자 금		193,600,000		153,000,000
Ⅱ. 자 본 잉 여 금		0		0
Ⅲ. 자 본 조 정		0		0
Ⅳ. 기 타 포 괄 손 익누계액		0		0
Ⅴ. 이 익 잉 여 금		65,000,141		28,588,180
법 정 적 립 금		3,000,000		0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62,000,141		28,588,180
(당 기 순 이 익)				
당기 : 36,411,961 원				
전기 : 28,588,180 원				

회사명 :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2(당)기 금 액		제1(전)기 금 액	
자 본 총 계		258,600,141		181,588,18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729,920,774		681,323,530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제명 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탈퇴·제명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③ 출자금은 가입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납입한다.

④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가입 후 1개월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손 익 계 산 서

제 2(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1(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2(당)기		제1(전)기	
	금 액		금 액	
Ⅰ. 매 출 액		110,587,912		39,899,999
전 기 매 출	110,587,912		0	
서 비 스 매 출	0		39,899,999	
Ⅱ. 매 출 원 가		0		0
Ⅲ. 매 출 총 이 익		110,587,912		39,899,999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78,450,525		7,839,404
직 원 급 여	21,920,000		1,920,000	
복 리 후 생 비	773,170		105,040	
출 장 비	1,309,000		207,100	
통 신 비	0		49,120	
세 금 과 공 과 금	1,281,780		0	
감 가 상 각 비	28,000,000		0	
지 급 임 차 료	6,358,811		0	
보 험 료	220,730		0	
교 육 훈 련 비	1,205,107		0	
회 의 비	953,400		0	
지 급 수 수 료	5,640,883		0	
홍 보 사 업 비	965,800		673,000	
사 무 운 영 비	9,821,844		2,361,720	
발 전 사 업 비	0		2,523,424	
Ⅴ. 영 업 이 익		32,137,387		32,060,595
Ⅵ. 영 업 외 수 익		18,518,136		60,945
이 자 수 익	18,383		1,070	
잡 이 익	18,499,753		59,875	
Ⅶ. 영 업 외 비 용		9,743,212		0
이 자 비 용	9,655,028		0	
잡 손 실	88,184		0	
Ⅷ.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40,912,311		32,121,540
Ⅸ. 법 인 세 등		4,500,350		3,533,360
법 인 세 등	4,500,350		3,533,360	
Ⅹ. 당 기 순 이 익		36,411,961		28,588,18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2(당)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1(전)기 2021년1월1일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3년 03월 16일 처분확정일 2022년 03월 31일

회사명 :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단위: 원)

과 목	제2(당)기 금 액		제1(전)기 금 액	
Ⅰ.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62,000,141		28,588,180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5,588,180		0	
2. 회 계 변 경 의 누 적 효 과	0		0	
3.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0		0	
4.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0		0	
5. 중 간 배 당 금	0		0	
6. 당 기 순 이 익	36,411,961		28,588,180	
Ⅱ. 임 의 적 립 금 등 의이입액		0		0
1.	0		0	
2.	0		0	
합 계		62,000,141		28,588,180
Ⅱ. 결 손 금 처 리 액		0		0
1. 임 의 적 립 금 이 입 액	0		0	
2. 기 타 법 정 적립금이입액	0		0	
3. 이 익 준 비 금 이 입 액	0		0	
4. 재 평 가 적 립 금 이입액	0		0	
5. 자 본 잉 여 금 이 입 액	0		0	
Ⅲ.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54,351,836		3,000,000
1. 이 익 준 비 금	4,000,000		3,000,000	
2.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0		0	
3. 배 당 금	10,675,918		0	
가.현금배당	10,675,918		0	
나.주식배당	0		0	
4. 사 업 확 장 적 립 금	29,000,000		0	
5. 감 채 적 립 금	0		0	
6. 배 당 평 균 적 립 금	10,675,918		0	
Ⅳ. 차 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648,305		25,588,180

※ 본 재무제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복리를 증진함과 함께, 태양광발전소 건설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며, 시민들에 대한 교육과 참여를 위한 제반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전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 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상남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자금예산]

법정적립금	3,000,000	법정적립금		적립 누계	2022년분 4,000,000원추가	7,000,000
이월잉여금	25,588,180	임의적립금		배당준비금	10,675,918	39,675,918
				펀드상환준비금	1~4호기 24,000,000	
				장기수선충당금	5,000,000	
당기순이익	36,411,961	발전소 건립비	신규 건립		5호기 200,000,000 6호기 300,000,000	500,000,000
		대출 상환	신협	기존대출 원리금	대출상환표에 따름	32,400,000
감가상각비	28,000,000	배당		이용배당규약	배당점수 1점당 5,000원 (배당점수총합 2,135.18)	10,675,918
이월자금	193,600,000					
신규출자금	100,000,000					
신규차입금	300,000,000	이월자금				96,848,305
(수입 계)	686,600,141	(지출 계)				686,600,141

제3호 의안. 2022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의결주문 : 2022년 감사보고서를 승인해 주십시오.**

□ 관련조항 : 정관 제34조 제1항 제6호, 제54조 제1항, 제67조 제2항

-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제5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 집행 상황, 재산 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7조(결산 등)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2022년 감사보고서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감사보고서]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이사회 및 조합원 귀하

본 감사는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결산서, 지출결의서, 사업보고서를 감사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지출결의서상의 금액과 통장 지출거래 내역, 사업계획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의 감사 결과, 상기 재무제표 등은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운영성과를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으며, 많은 시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 이익나눔형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13일

감사 이 상 준 (서명 또는

Ⅱ. 2023년도 예산안

수 입 (단위: 원)		비 용/지 출 (단위: 원)				
계정과목	금액 (단위:원)	계정 과목	항	목	산출 내역	금액 (단위:원)
[손익예산]						
발전수익	150,000,000	사업비	발전소 유지관리	임차관리비	임차료,보험료,전기안전 등	6,100,000
				유지보수비	점검, 유지보수 교육 등	4,600,000
일자리 지원금	21,600,000		신규발전소 건설	5호기 건설	130kW 공사감독, 기타비용 등	5,000,000
				신규부지 추진비	부지확보를 위한 방문, 면담 등	5,000,000
			조합원 교육	정기교육	강사비 등 2회 진행	1,000,000
				대중강연	전문강사 초빙	1,000,000
			협동조합간 협동	연대사업 등	이종연합회 등 협동조합 간 네트워킹	1,700,000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홍보비	홍보물제작 등	2,000,000
				RE100 사업	행사비 등	1,000,000
			원리금 상환	신협	411,070,000×2.5% 원리금합계 매월 약2,700,000	32,400,000
				1~4호기 펀드	49,000,000×4.5%	2,205,000
				5호기 펀드	100,000,000×4.5%×80%	3,600,000
			감가상각비	비현금 지출	정률법 20년 상각	28,000,000
			소계			93,605,000
		경상비	인건비	급여	2,050,000원×12월	24,600,000
				사회보험	230,000×12월	2,760,000
				퇴직금 적립	170,000×12월	2,040,000
			사무운영비	임차료	400,000×12월	4,800,000
				제세공과금		1,500,000
				사무용품, 통신비		2,500,000
			조직운영비	회의비	350,000×10회	3,500,000
				출장비	200,000×20회	4,000,000
				기타		2,500,000
			소계			48,200,000
(수익 계)	171,600,000	(비용 계)				141,805,000
		세전 순이익				29,795,000
		당기순이익		1억 이하	세금 3,278,000(11%) 공제	26,517,000

업, 전력거래 중개사업 등 시민발전 진영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확산에 참여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RE100시민클럽 창원 네트워크 회원 확대 및 각종 행사 참여

‣ RE100시민클럽 창원 네트워크 회원 현황(2023년 2월 말 현재)
총 208명(옐로우 188명, 그린 13명, 블루 7명)

- 재생에너지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카드 뉴스, 리플렛 등)

제4호 의안.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 **의결주문 :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을 승인해 주십시오.**

□ 관련조항 : 정관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3항

-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 **탈퇴 조합원 지분 환급 청구서 - 1명 / 환급 금액 500,000원**

지분환급 청구서

조합원명	김 순	전화번호	010-
주소	창원시 성산구		
탈퇴(제명)일	2022년 09월 29일	지분(출자금)	500,000원
입금계좌(예금주)		은행명	농협

위와 같이 본인의 지분 환급을 청구합니다.

2023년 3 월 14 일

성 명 : 김 순 (서명 또는 날인)

※ 조합원명과 예금주가 상이할 경우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귀중

제5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의결주문 : 202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 관련조항 : 정관 제34조 제1항 제4호, 제63조

-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 예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Ⅰ. 2023년도 사업계획(안)

1. 발전소 운영 및 유지 관리

- 발전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조합원과의 소통 체계 구축

‣ 발전량 자료 블로그 업로드, 월별 발전량 자료 SNS로 공유 등

- 1 ~ 4호기 발전소 유지 관리 철저

‣ 하자 처리 철저, 태양광 패널, 인버터, 접속반 등 정기 점검 기록부 관리 등

‣ 연차별 유지 관리 업무 및 정기 보수계획 수립

- 유지관리 전담 인력 양성

‣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노하우 전수

‣ 시공 관리 감독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설 요청

- 사고예방 및 긴급대응 메뉴얼 정비

‣ 태풍대비 예방점검 매뉴얼 작성 및 활용

‣ 사고발생 시 긴급연락체계 및 대응 매뉴얼 작성

2. 신규발전소 건설 등 발전사업 확대

- 신규발전소 건설 확대(23년 목표 300kW)

‣ 5호기(국제사격장 130kW) 건설 차질없이 추진

‣ 창원공단 공장 지붕, 창원컨벤션센터 등 유휴 부지 확보 추진

- 중소규모 풍력발전소 건설 추진

‣ 창원시 그린스마트팩토리(가칭) 사업 경험 공유(진북산단, 마산수출자유지역)

‣ 해안가 마을 등 풍력자원이 우수한 지역 대상으로 소규모 풍력발전 사업화 모색

3. 조합원 교육 및 정보제공

- 협동조합의 이해 및 정관, 규약, 규정 교육 정례화

‣ 상반기 : 대의원 교육, 하반기 : 신입 조합원 교육

-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교육 실시

‣ 전문 강사 초빙 교육(조합원 포함 시민 대상 교육)

4. 협동조합 간 협동

-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의 협력 확대

‣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개발, 위탁사업 협력, 공제보험 공동구매, 통합모니터링 사